



승환계약 시 부활 청구에 대한 검토

백영화 연구위원

요 약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보험계약자가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함에 있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부당 승환계약의 부활 절차에 있어서는 고지의무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 또한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다른 보험회사에의 기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¹⁾를 위반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²⁾
 -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임
-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함에 있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부당 승환계약의 부활 절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석됨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음³⁾

1) 부당 승환계약 금지 조항임

2)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3) 상법 제650조의2

- 이러한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⁴⁾ 부활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석됨
- 그에 따라 표준약관에서도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의 경우에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음⁵⁾
- 한편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이행이나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재심사 절차 없이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
 - 부당 승환계약 부활의 경우에는 모집종사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보호 취지를 좀 더 충실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경우인 데 반하여, 부당 승환계약 부활의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모집종사자에게 있는 경우이므로 달리 취급할 수 있을 것임
 - 실무상으로도 부당 승환계약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당 승환계약의 부활 절차에 있어서 고지의무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

○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음

-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를 위해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었을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그런데, 부당 승환계약에는 ① 기존 보험계약이 먼저 소멸되는 경우(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와 ② 새로운 보험계약이 먼저 청약되는 경우(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②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예컨대, 기존에 유사한 보험계약이 있는데 이를 유지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기 위해 문의나 신청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비교 안내를 받고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는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전에 체결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법 개정 등을 통하여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음

4) 상법 제650조의2에서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조항인 상법 제638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2항 등임

- 부당 승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데, 다른 보험회사에의 기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됨⁶⁾
 - 즉,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보험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활과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들 사이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실무적으로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타사와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⁷⁾
 - 만약 타사에의 보험가입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예: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⁸⁾),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를 적용하는 방안(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신용정보원 정보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6)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7) 한기정(2019), 『보험업법』

8) 이투데이(2019. 4. 11), “손해보험, 신규 가입 때 기존상품 비교 안내 의무화한다”; 한국경제(2019. 11. 26), “보험 갈아타기 꼼짝마… 신·구계약 비교시스템 구축된다”